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7-100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폐지사유

본 조례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제정하였으나, 건립사업이 모두 종료되어 기금 설치 목적이 달성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 설치 목적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준공 및 개관으로 인해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본 조례 폐지
- 나.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7. 10. 19. ~ 11. 8.(제출 의견 없음)
- 나. 부패영향자율평가(감사담당관)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평가(가정복지과)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7. 11. 1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
건립기금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·운영에 관한
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발생한 서울특별시
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의 잉여금은 서울특별시
마포구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.